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5,620,137	22,968,604
일반회계	704,795,605	21,143,868
특별회계	60,824,532	1,824,736
공기업특별회계	54,676,760	1,640,30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350,076	1,150,50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326,684	489,801
기타특별회계	6,147,772	184,43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28,332	57,850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667,399	50,022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118,151	63,54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33,890	13,01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21,714,21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